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4. 8 선고 2021가단620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
담당변호사 박정혁, 문옥

피 고 A교회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휘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우
변 론 종 결 2022. 3. 25.
판 결 선 고 2022. 4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 1. 체결된 증여계약은
80,093,93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80,093,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

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

- 1) 원고는 2013. 3. 11. ‘C자동차공업사’를 운영하는 B와 사이에, B의 주식회사 D(이하 ‘이 사건 은행’이라고 한다)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, 보증원금을 85,000,000원, 보증기한을 2014. 3. 10.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(보증번호: E)를 발행해주었으며,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최종적으로 보증원금 72,250,000원, 보증기한 2021. 3. 5.까지로 변경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신용보증약정’이라고 한다).
- 2) B는 2013. 3. 20.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100,000,000원을 변제기 2014. 3. 10.로 정하여 대출받았다(이하 ‘이 사건 대출’이라고 한다).
- 3) B는 2020. 7. 23.경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는 2020. 9. 18.경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았다.
- 4) 원고는 2020. 11. 16. 이 사건 은행에 B를 대위하여 73,394,115원을 변제하였고,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,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이율은 연 8%이다.
- 5)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21차전46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1. 15. ”B는 원고에게 73,409,242원 및 그 중 73,394,115원에 대하여 2020. 11. 16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91,300원을 지급하라“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지급명령’이라고 한다), 위 지급명령결정정본은 2021. 1. 31. B에게 송달되었으며,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

1) B는 2019. 12. 1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을 증여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고 한다)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9. 12. 19. 접수 제106011호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2)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3. 2. 28. 접수 제11717호로 된 채권최고액 1,617,600,000원, 근저당권자 F단체 명의의, ② 같은 등기소 2015. 6. 16. 접수 제43690호로 된 채권최고액 308,400,000원, 근저당권자 F단체 명의의, ③ 같은 등기소 2015. 11. 24. 접수 제99734호로 된 채권최고액 260,000,000원, 근저당권자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.

3)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,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0. 3. 9. 접수 제26039호로 된 채권최고액 1,793,000,000원, 근저당권자 H조합 명의의, ② 같은 등기소 2020. 7. 21. 접수 제79012호로 된 채권최고액 77,000,000원, 근저당권자 H조합 명의의, ③ 같은 등기소 2020. 7. 28. 접수 제81121호로 된 채권최고액 84,000,000원, 근저당권자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있었고,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

취득하였다. 그런데 B는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.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0,093,93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,093,934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관련법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 한편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,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,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,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,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).

2)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

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

증여계약 체결일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, B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.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1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-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도 B와의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변경하였는데, 원고는 위 변경 당시 B의 재무상태 및 상환능력에 관한 상당한 심사를 거쳐 보증기간을 연장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.
- ②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B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외에도 J 주식회사, K카드 등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채무에 관하여 연체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
- ③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.
- ④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. 7. 23.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0. 11. 16. 이 사건 은행에 B를 대위하여 73,394,115원을 변제하였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숙희

별지